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19. . .
발 의 자	이지연 의원 외 5명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지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9. . .

발의자 : 이지연 · 박교상 · 송용자 · 이선우
장세구 · 홍난이 의원(6인)

1. 제안이유

남북 간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우리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문화·체육·학술·농업·관광 등에 관한 인도주의적 사업 추진으로 평화와 통일의 공감대 형성 및 평화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여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발맞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11조)

3. 조 례 안 : 불 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불임)

다. 기 타 : 조례안 예고(2019. 10. 2. ~ 10. 10.) 결과 의견없음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구미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구미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구미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경제·학술·농업·관광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및 사업지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
4.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
6.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7.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위 조례안 제4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4조)
-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지원사업은 앞으로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할 사항으로 예산의 소요는 예정되나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
-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의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위원회 참석수당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70천원×15명×4회	4,200천원

※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70,000원(기본)

4. 작성자

- 총무과 시정계 조영상(480-6764)